용마터널. 강남순환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위한 의견청취안

의 안 번 호 1338

제출년월일: 2020년 2월 5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(단위 : 원/대. VAT포함)

1. 제안이유

우리시에서 관리 중인 민자도로 중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의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「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징수대상시설

구 분	용마터널	강남순환로
위 치	중랑구 면목동~구리시 아천동	금천구 시흥동~서초구 우면동
규 모	연장 3.5km, 왕복 4차로	연장 12.4km, 왕복 6~8차로
영업소	1개소	2개소(금천, 선암)
개통일시	2014.11.21	2016.7.3

나. 통행료 인상내역

Э н	용마터널		강남순환로			
구 분	최초 ('14.11.21)	2020년	인상액	최초 ('16.7.3)	2020년	인상액
소 형	1,500	1,500	-	1,600	1,700	100
중 형	2,500	2,600	100	2,800	2,900	100
대 형	3,200	3,300	100			

※ 경차 : 50% 할인 적용

강남순환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라 대형차량 통행제한

- 다. 통행료의 산출기초
 - 협약상 차종별 기준통행료에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누적 적용하여 산정(붙임 참조)
- 라. 징수기간 : 2020.4.1.부터
- 마. 통행료 징수방법 : 유인징수 및 전자요금(ETCS)징수 방식 혼용
- 바.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
 -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8조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(붙임 참조)
- 사. 유사시설의 통행료 수준 : 붙임 참조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,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도로계획과 민자사업팀 김정식 (☎ 2133-8073)

통행료 산정 관련 자료

1. 2020년 통행료

【용마터널】

가. 통행료 산정

○ 기준 통행료에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을 100원 단위에서 사사오입 방식으로 절상 또는 절하하여 통행료를 산정함

나. 최초통행료('14.11.21)

(단위 : 원/대, VAT포함)

구 분	소 형	중 형	대 형
기준 통행료	1,019.00	1,732. ³⁰	$2,241.^{80}$
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적용	1,475. ³⁶	2,508.12	$3,245.^{80}$
최초통행료	1,500	2,500	3,200

다. 2020년 통행료('20.4.1)

(단위 : 원/대, VAT포함)

구 분	소 형	중 형	대 형
기준 통행료	1,000.00	1,700.00	2,200.00
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적용	1,516.90	2,578. ⁷³	3,337.18
2020년 통행료	1,500	2,600	3,300

- 적용 소비자물가지수

구 분	물가지수
2001년 4월말 소비자물가지수	69. ³⁰¹ %
2019년 12월말 소비자물가지수	105. ¹² %
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	151. ⁶⁹ %

※ 2015년 기준(=100) 소비자물가지수임

【강남순환로】

가. 통행료 산정

○ 기준 통행료에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을 100원 단위에서 사사오입 방식으로 절상 또는 절하하여 통행료를 산정함

나. 최초통행료('16.7.3)

(단위 : 원/대, VAT포함)

구 분	소 형	중 형	
기준 통행료	1,087.65 1,849.00		
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적용	1,626. ⁷⁴	2,765. ⁴⁵	
최초통행료	1,600	2,800	

다. 2020년 통행료('20.4.1)

(단위 : 원/대, VAT포함)

구 분	소 형	중 형	
기준 통행료	1,087.65 1,849.00		
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적용	1,703.80	2,896. ⁴⁶	
2020통행료	1,700	2,900	

- 적용 소비자물가지수

구 분	물가지수
2000년 11월말 소비자물가지수	67. ¹⁰⁴ %
2019년 12월말 소비자물가지수	105.120 %
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	156. ⁶⁵ %

※ 2015년 기준(=100) 소비자물가지수임

2. 차종 구분

구 분	대 상 차 량 제 원	
소 형	2축 차량, 윤폭 130mm초과 279.4mm 이하 (승용차, 16인승 이하 소형버스, 2.5톤 미만 소형화물)	
구 성	2축 차량, 윤폭 279.4mm 초과, 윤거 1,800mm이하 (대형버스 17인승이상, 중형화물 2.5톤 이상~10톤 이하)	2종
중 형	2축 차량, 윤폭 279.4mm초과, 윤거 1,800mm초과 (33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, 2축 5.5톤~10톤 미만 화물차)	3종
3축 대형 화물차(10톤 초과) 대 형		4종
पा छ	4축 이상 대형 화물차(20톤 초과)	5종
경 차	배기량 1,000cc 미만 경자동차, 길이 3.6m이하, 너비 1.6m 이하, 높이 2.0m 이하	

3. 통행료 면제 및 감면 대상

가. 면제 대상(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제3항1호)

구 분	면제 대상
유료 도로법	 ○ 군작전용 차량, 구급 및 구호차량,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○ 경찰작전용 차량,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·유지관리용 차량 ○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세대원 소유 차량으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비영업 차량 중 승용자동차,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,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○ 국가유공자(1~5급) 및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(1~5급) 또는 대상자의 세대원 소유 차량으로서 대상자 본인이 승차한 비영업용 차량중 2,000cc 이하 승용자동차, 7인승~10인승 승용자동차,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,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○ 천재지변 또는 파업 등으로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차량
서울시	○ 시·구 제설차량(제설기간, 11.15~익년 3.15) ○ 시 도로유지 관리차량

나. 감면 대상(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2호)

구 분	감면 대상	감면율		
경자동차	○ 배기량 1,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.6미터, 너비 1.6미터, 높이 2.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	50%		
전기자동차	○ 길이 3.6미터, 너비 1.6미터, 높이 2.0미터 이하인 차량	50%		
장애인 차량	○ 등록된 장애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 인이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*	50%		
국가유공자 차 량	○ 6급 또는 7급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*	50%		
5·18 민주 유 공 자	○ 6급 내지 14급의 신체장애등급을 받은 등록된 5·18민주화운동부 상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5·18민주화운 동부상자가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*	50%		
고엽제 후유증 환자 차량	○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위 환자가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*	50%		
*비여어용 차량(시해규칙 제5고제4하) · 9 000cc 이치 스용기도차 7이스~10이스 스용기도치				

*비영업용 차량(시행규칙 제5조제4항) : 2,000cc 이하 승용자동차, 7인승~10인승 승용자동차,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,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

다. 통행료 면제 및 감면 차량의 해당여부 증명

○ 영 제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식별표지 부착

3. 유사시설의 통행료 수준

관리청	시 설 명	연 장 (km)	통행요금
서울특별시	우면산터널	2.96	소형·중형 : 2,500원
강원도	미시령터널	3.69	소형 : 3,300원, 중형 : 5,600원 대형 : 7,200원
대구광역시	대구남부순환도로 (앞산터널로)	10.44	소형 : 1,600원, 대형 : 2,200원
경기도	수석~호평	11.2	소형 : 1,400원, 중형 : 2,800원 대형 : 3,500원
경기도	일산대교	1.84	소형 : 1,200원, 중형 : 1,800원 대형 : 2,400원
경상남도	마창대교	1.70	소형 : 2,500원, 중형 : 3,100원 대형 : 3,800원
경상남도	창원~부산	22.48	소형 : 2,000원, 중형 : 3,000원 대형 : 3,800원

[※] 통행요금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